
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 검률, 사망률을 명시함(안 제14조제1항 전단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